

#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15호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디지털기기 사용 보편화 및 정보통신·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와 그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실질적 수행 주체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촬영물 등을 지칭하는 용어가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불법촬영물' 등으로 통일하여 규정함으로써 용어 사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